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규정명: 학칙

조 문	현 행	개 정(안)	비고
<b>제17조(입학자격)</b>	<p><b>제17조(입학자격)</b> ①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</p> <p>②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하며, 관련 학과 졸업자는 &lt;별표4&gt;에 해당한다. 단, &lt;별표4&gt;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공심화과정 개설학과의 관련학점을 50%이상 이수한 경우 관련과 졸업자로 인정하며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</p> <p>③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선정학과 및 이외의 학과에서도 성인학습자를 모집할 수 있다.</p> <p>④전문기술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</li> <li>2.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</li> <li>3. 관련 분야 재직경력(학사학위 취득 전 경력이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)이 3년 이상인 자</li> <li>4. 제3호에 따른 관련 분야는교육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.</li> </ol>	<p><b>제17조(입학자격)</b> ①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</p> <p>②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하며, 관련 학과 졸업자는 &lt;별표4&gt;에 해당한다. 단, &lt;별표4&gt;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공심화과정 개설학과의 관련학점을 50%이상 이수한 경우 관련과 졸업자로 인정하며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</p> <p>③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선정학과 및 이외의 학과에서도 성인학습자를 모집할 수 있다.</p> <p>④전문기술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</li> <li>2.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</li> <li>3. 관련 분야 재직경력(학사학위 취득 전 경력이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)이 3년 이상인 자</li> <li>4. 제3호에 따른 <b>관련 분야의 재직경력</b>은 &lt;별표5&gt;에 해당하며, 전문기술석사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&lt;개정 2024.12.01.&gt;</li> </ol>	<p>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 6조5항의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 요건 중 '재직경력 인정기준'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고시 폐지 및 학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바, 재직경력 인정 기준표 신규 제정 및 그에 따른 내용을 학칙에 명시</p>

제33조(학점이수)	제33조(학점이수) ③전공심화과정 학생은 매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, <b>24학점</b> 까지 이수 할 수 있다. 다만, 학과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2.12.04.><개정 2014.02.26., 2023.12.15.>	제33조(학점이수) ③전공심화과정 학생은 매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, <b>21학점</b> 까지 이수 할 수 있다. 다만, 학과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2.12.04.><개정 2014.02.26., 2023.12.15., 2024.12.01.>	졸업학점 변경으로 인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 변경
제46조(졸업)	제46조(졸업) ②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70학점 이상, 3년제 110학점 이상, 4년제 1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본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1년제 학과는 20학점 이상, 2년제 학과는 6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,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 ③학부(과)는 필요한 경우 졸업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. 졸업인증 기준 설정 및 시행여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(과)별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실시한다.	제46조(졸업) ②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<b>65학점 이상</b> , 3년제 <b>105학점 이상</b> , 4년제 <b>125학점 이상</b> 취득하여야 하며 본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1년제 학과는 20학점 이상, 2년제 학과는 6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,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<b>125학점 이상</b> 취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12.01.> ③학부(과)는 필요한 경우 졸업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. 졸업인증 기준 설정 및 시행여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(과)별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실시한다.	전 과정 졸업학점 조정에 따른 반영  전문학사과정 졸업 최소 이수학점 조정에 따라, 전공심화과정 졸업 학점 변경
부칙	부 칙 제1조(시행일) ①이 학칙은 202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학과통합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종전의 창업경영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영학과 소속으로 본다. 제3조(이수학점 변경 및 성적의 취소 기준 변경, 졸업학점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이 학칙 중 제33조 제2항, 제44조 제2호, 제46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 단, 제46조 제2항의 전공심화졸업학점은 2024학년도 후기졸업생부터 적용한다.	부 칙 제1조(시행일) ①이 학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학과통합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종전의 창업경영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영학과 소속으로 본다. 제3조(이수학점 변경 및 성적의 취소 기준 변경, 졸업학점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이 학칙 중 제33조 제2항, 제44조 제2호, 제46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 단, 제46조 제2항의 전공심화졸업학점은 2024학년도 후기졸업생부터 적용한다.	
별표 5	신규제정	별도첨부	

※ 조항별로 따로 입력 할 것.

※ 신·구 대조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개정된 내용에는 색깔, 밑줄 등의 표시를 할 것.

※ 조항 신설 및 삭제 시에는 현행, 개정(안) 칸 중 한쪽에만 입력할 것.(제정 시에는 개정(안) 부분에만 제정 규정 입력, 삭제 시에는 현행 부분에 기존 규정 입력)

※ 개정(안) 부분에는 규정 제·개정 표시 방식에 의거하여 조항에 신설, 개정, 삭제, 전문개정, 본조신설 등의 규정 변동 이력을 표시할 것.

### 전문기술석사과정 재직경력 인정기준

계열	과정	전공	주요 내용	관련 분야 재직 경력
공학	미래자동차과정	지상교통	철도, 자동차, 특수차량 등 유사전공	도시철도공사(지하철공사), 고속철도공단, 경전철 사업단, 기술직 공무원, 전기철도 설계업체, 전기철도 시공업체, 전기철도 유지·보수업체, 철도차량 및 기기 생산업체, 전력설비 관련업체, 유·무선 통신관련업체, 신호제어 및 자동화, 철도운용D/A, 철도관제, 철도운전, 정비차량운전, 철도선로시설물 유지보수 철도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등 유사직무
		기계	산업기계 및 관련 장치설비의 설계, 제작, 이용 관리 등 유사전공	기계기술자, 건설기계기술자, 엔진 및 기관기술자, 자동차설계원, 공구제조원, 공장 기계조작원, 기계설계기획, 절삭가공, 특수가공, 기계조립, 기계생산관리, 기계품질 관리, 기계장비설치·정비 등 유사직무
		자동차	자동차 설계, 내연기관, 자동차 전기전자 등 유사전공	자동차관리사, 자동차생산업체, 중장비생산업체, 자동차유통 및 관리업체, 자동차정비/검사업체의 직원, 자동차정비사 등 유사직무
		전기	전력시스템, 전기전자재료, 제어공학, 정보통신공학 등 유사전공	전자제어계측기술자, 전력전기공학기술자, 전기공사기술자, 전기제어기술자, 전기안전기술자, 전력자동화기술자, 전력설비기술자, 내·외선공사, 전기기기설계, 전기기기 유지보수 등 유사직무
		전자	전자공학, 전자정보, 디지털시스템 등 유사전공	전자제품개발 설계기술자, 전자제어계측기술자, 전자부품조립 및 검사원, PCB설계 기술자, 전자응용기기개발, 전자응용기기생산, 전자부품기획, 전자부품개발, 전자부품생산 등 유사직무
		재료	신소재 제조 및 가공, 재료공학 등 유사전공	재료공학기술자, 금속공학기술자 등 유사직무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규정명: 학칙 시행세칙

조 문	현 행	개 정(안)	비고
제48조(졸업의 기준)	<p><b>제48조(졸업의 기준)</b> ①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문학사 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(3년제 학과는 6학기 이상 등록한 자), 학사학위 과정 중 본 과정은 8학기 이상 등록한 자, 전공 심화 과정은 2학기(1년 과정), 4학기(2년 과정) 이상 등록한 자(개정 2007.03.01., 2012.12.04., 2016.02.29.)</li> <li>2. 2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(개정 2020.02.14., 2022.03.01., 2024.09.01.)</li> <li>3. 3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110학점 이상인 자(신설 2004.03.25.)(개정 2020.11.23., 2022.03.01., 2024.09.01.)</li> <li>4. 전공심화과정은 총 취득학점이 130학점 이상인 자(신설 2012.12.04.)(개정 2020.11.23., 2022.03.01., 2024.04.15.)</li> <li>5. 4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130학점 이상인 자(신설 2016.02.29.)(개정 2020.11.23., 2022.03.01., 2024.09.01.)</li> </ol> <p>②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.(개정 2017.04.27.)</p> <p>③삭제 (2004.03.25.)</p> <p>④교직 과목의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총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p> <p>⑤전문기술석사과정의 졸업사정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(신설 2023.12.15.)</p>	<p><b>제48조(졸업의 기준)</b> ①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문학사 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(3년제 학과는 6학기 이상 등록한 자), 학사학위 과정 중 본 과정은 8학기 이상 등록한 자, 전공 심화 과정은 2학기(1년 과정), 4학기(2년 과정) 이상 등록한 자</li> <li>2. 2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<b>65학점 이상</b>인 자(개정 2020.02.14., 2022.03.01., 2024.09.01. <b>2024.12.01.</b>)</li> <li>3. 3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<b>105학점 이상</b>인 자(신설 2004.03.25.)(개정 2020.11.23., 2022.03.01., 2024.09.01., <b>2024.12.01.</b>)</li> <li>4. 전공심화과정은 총 취득학점이 <b>125학점 이상</b>인 자(신설 2012.12.04.)(개정 2020.11.23., 2022.03.01., 2024.04.15., <b>2024.12.01.</b>)</li> <li>5. 4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<b>125학점 이상</b>인 자(신설 2016.02.29.)(개정 2020.11.23., 2022.03.01., 2024.09.01.)</li> </ol> <p>②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.(개정 2017.04.27.)</p> <p>③삭제 (2004.03.25.)</p> <p>④교직 과목의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총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p> <p>⑤전문기술석사과정의 졸업사정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(신설 2023.12.15.)</p>	<p>전문학사과정 졸업 최소 이수학점 조정에 따라, 전공심화과정 졸업 학점 변경</p>

부칙	부 칙	부 칙	
	<p>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졸업 기준 학점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이 학칙 시행 세칙 중 제48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</p>	<p>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졸업의 기준 적용시기) 제48조(졸업의 기준)의 1항은 2025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</p>	

※ 조항별로 따로 입력 할 것.

※ 신·구 대조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개정된 내용에는 색깔, 밑줄 등의 표시를 할 것.

※ 조항 신설 및 삭제 시에는 현행, 개정(안) 칸 중 한쪽에만 입력할 것.(제정 시에는 개정(안) 부분에만 제정 규정 입력, 삭제 시에는 현행 부분에 기존 규정 입력)

※ 개정(안) 부분에는 규정 제·개정 표시 방식에 의거하여 조항에 신설, 개정, 삭제, 전문개정, 본조신설 등의 규정 변동 이력을 표시할 것.